

## 대학원학칙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시행세칙

2004.3.1 제정  
 2006.3.1 개정  
 2009.9.1 개정  
 2016.3.1. 일부개정  
 2017.9.1. 일부개정  
 2018.3.1. 일부개정  
 2019.3.1. 일부개정  
 2020.3.1. 일부개정  
 2021.3.1.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대학원학칙이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기본목적에 따라 컴퓨터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이론과 실제를 더욱 심오하게 연구, 교육함으로써 국가, 정보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년한

제 3 조 (수업·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6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3 장 수업

제 4 조 (수업) ①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5 조 (출석) ① 출석이 전체 총수업시간의 2/3에 미달하는 자는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② 출석부는 학사행정실에서 관리한다.

제 6 조 (시험)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학기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제 7 조 (불응시원) ① 신병, 병역, 애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응시원서에 관계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행정실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불응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병 : 종합병원 진단서
2. 병역 : 소집영장 또는 입영확인서 사본
3. 애사 및 기타 : 증빙서류

## 제 4 장 입학과 학과변경

- 제 8 조 (재입학 및 재입학시기) 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 9 조 (학과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 제 5 장 등록과 수강신청

- 제 10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미 수강한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11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초 수강 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제 6 장 교육과정과 수료

- 제 12조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연계과목은 6 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동일과목의 학점이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로서 본 대학원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6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과정 재학기간 중 본 대학원 이외의 본교 및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학 상급학년 과정과 공동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 위탁생이 군교육기관(국방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 대학원과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위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취득인정학점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3조 (이수과목 인정)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전공학과 변경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기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이수과목 및 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논문트랙(26학점, 타전공 입학자 30학점)

- (1) 전공선택 : 12학점
- (2) 일반선택 : 10학점
- (3) 논문세미나 : 2학점
- (4) 논문지도 : 2학점

(5) 기초공통과목 : 4학점 (타전공 입학자)

2. 석사과정 교과트랙(30학점, 타전공 입학자 34학점)

- (1) 전공선택 : 16학점
- (2) 일반선택 : 14학점
- (3) 기초공통과목 : 4학점 (타전공 입학자)

② 연구과정(12학점)

- 가. 전공선택 4학점 이상
- 나. 일반선택 나머지 학점
- 다. 선수과목 4학점

제 15조 (이수지정과목)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한(타전공) 입학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교과과정의 선수과목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교과운영)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공당 개설 교과목수는 5과목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제 7 장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 제 1 절 지도교수

제 17조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료)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하며, 2학기 이상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절차) ①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장은 제 2학기말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학생개인별 지도교수를 위촉·배정하여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서류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 제 2 절 학위청구

제 19조 (학위청구 자격) ① 세칙 제14조 1항 1호의 학점을 이수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
  5. 대학원에서 지정한 주요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이 결정된 자
- ② 세칙 제14조 1항 2호의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20조 (주요학회) 본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주요학회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21조 (학위청구 논문 제출의 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제출은 2회에 한하며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등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다음부터는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 특례대상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 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을 하여야한다.
  5.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된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2조 (학위논문 계획서)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3차 학기 초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3조 (심사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입하고 완성된 논문을 소정기일내에 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4조 (학위논문 중간발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중간발표는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관련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 ③ 논문중간발표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 발표회의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5조 (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 원고 3부와 함께 심사료를 첨부하여 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시기는 전기는 4월 30일, 후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6조 (논문 작성 용어)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 ②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3 절 자격시험

- 제 27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과목으로 시행한다.
- ③ 종합시험은 전공영역 중에서 1과목을 실시한다.
- 제 28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외부 공인 기관이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한다.
- ②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 29조 (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기일내에 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0조 (시험시기)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31조 (종합시험과목) 전공영역 중에서 1과목을 실시한다.
- 제 32조 (시험방법 및 출제위원) ① 종합시험은 필기고사를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 ② 자격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각 과목당 1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3조 (출제범위) 종합시험의 경우 전공영역은 일반적인 기본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제 34조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의 합격인정은 학과주임 사정회의에서 결정하며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토플 또는 토플 성적이 우수한 자, 국제어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며 그 기준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35조 (재응시) ①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5학기 수료 후 2년 이내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 제 4 절 학위수여

- 제 36조 (심사위원) 대학원장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제 37조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 ① 논문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 및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 38조 (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제 39조 (심사방법) ① 논문 심사는 내용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주요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구술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단, 게재된 논문과 심사논문의 주제가 동일해야 한다.
- 제 40조 (심사판정) ① 구술시험을 포함한 논문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 ②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 41조 (대학원위원회 심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 심사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8 장 포상 및 징계

- 제 42조 (장학금)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교내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43조 (교내장학금) ① 교내 장학금은 재학생 장학금과 학생 활동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생회 활동)으로 구분한다.  
 ② 재학생 장학금은 학과별 재학생 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 활동 장학금 수여자는 전체 교내 장학생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44조 (교내 장학생 선정) ① 재학생은 전 학기 성적 최우수자로 하되, 당시 1학기 - 4학기 재학생 중 6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단, 계약학과 재학생은 전 학기 성적 최우수자로 하되 당시 1학기 - 3학기 재학생 중 9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 활동 장학금 수여자는 학생 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③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휴학중인 자는 제외한다.
- 제 45조 (동순위자 처리) 제 44조의 교내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동순위자인 경우에는 상위 학기 재학생, 연소자 순으로 하며 학기별 형평을 고려하되 그 이외의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계약학과는 교내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동순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액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장 공개강좌, 연구생

- 제 46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 서식(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47조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제 8조의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 제 48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교과는 교과과정 일람에 의한다.
- 제 49조 (계약학과)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0 장 대학원위원회

- 제 50조 ①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 11 장 대학원발전위원회

- 제 51조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다.  
 ② 이 위원회는 학내외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5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되

는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3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대학원장에게 건의한다.

1. 대학원의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제 54조 (운영) 이 위원회의 임원의 임명과 운영 및 기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19조 제5호는 2005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14조 1항 2호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파통신공학과 종합시험 기초공통영역 시험은 개정 후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 운영체제 택1) 또는 개정 전(신호처리개론, 통신공학개론, 전파통신개론 택1) 시행세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제1항, 제2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신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개정 및 제21조 제2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수료자를 제외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제1항, 제45조 개정)